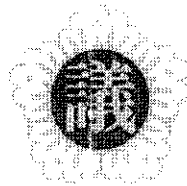


제230회 정례회
2004. 7. 14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중 도 및 일부 시·군 새마을 단체가 사단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명칭이 변경되었음
- 위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(제1조 및 제3조)
-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 정비(제4조 및 제5조)
 -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→ 새마을운동중앙회
 -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 → 충청북도새마을회

- 도지부회장 → 도새마을회장
- 시·군지회장 → 시·군지회장, 시·군새마을회장
- ※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·군지회는 기존 명칭 사용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의
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
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